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

수신 교육부장관

(경유)

제목 「항공보안법」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('22.1.28) 관련 재협조 요청

1. 귀 기관(부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-272(2022.1.28.)의 관련입니다.
3. 우리부는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명서 소지·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「항공보안법」 및 하위 법령이 개정 시행('22.1.28.)됨에 따라 유효한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내 사항을 각급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.
4. 특히, 학생증의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이 함께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고 있으므로, 다시 한번 관련 사항이 전국 시·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항공기 탑승 거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

- 1) 만 19세 미만 승객은 학생증으로 탑승이 가능하나 성명과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학생증만 인정되며, 학생증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누락된 경우라면 탑승이 거절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증명서, 청소년증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2) 유효기간이 경과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의 경우 본인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신분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5. 아울러,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위와 관련한 법령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항공기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1부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주무관 허백용 전산사무관 대결 2022. 2. 28. 항공보안과장 전결
이태진

협조자

시행 항공보안과-516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-1943 (2022. 2. 28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,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/ http://www.molit.go.kr
항공보안과

전화번호 044-201-4235 팩스번호 044-201-5626 / whidra21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